#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48 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남인순·김경만·김승원

민형배 · 박성준 · 박홍근

안규백 · 양정숙 · 윤재갑

윤준병 • 이광재 • 이규민

이상헌 · 전혜숙 · 정춘숙

최혜영 · 허종식 · 홍성국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·검사의 기준·방법·절차, 시험·검사성적서 발급 및 부적합 판정 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.

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 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·검 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.

이에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

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·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35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시험·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보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,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제2항에 따라 의뢰자에게 시험·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시험·검사의 절차 등) ①	제11조(시험・검사의 절차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의3
	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에 이
	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시험・
	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총리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
	없이 제3항에 따른 보고 기관
	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⑤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의3
	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
	받은 시험·검사기관 또는 <u>같</u>
	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
	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
	<u>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같은</u>
	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검
	사 항목, 기준 및 방법에 따라
	검사를 실시한 후 제2항에 따
	<u>라 의뢰자에게 시험·검사성적</u>
	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